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설치 등〉

■ 이정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15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 병 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추가	3
2.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설치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21.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금융시장 인프라 등의 금융 관련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관련 보안기술과 정책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또한 올해 7월부터 가상자산소비자 보호법도 시행되어 금융 보안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는 안전한 디지털금융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금융 관련 보안원칙과 적용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금융당국 내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설치하여 금융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구축과 보안사고의 예방·대응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에 관한 보안 부분을 추가하고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

치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추가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금융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구축 및 보안사고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17조제6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u><신설></u> 6. ~ 10. (생략)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금융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구축 및 보안사고 예방·대응에 관한 사항</u> 7. ~ 11.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금융 정책 및 제도,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금융기관 관련 인·허가,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 등을 규정하고 있음.¹⁾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8.>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금융위원회의 금융 보안 관련 사무를 살펴보면,

○ 현행법에 따른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인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이 ‘전자 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과 ‘금융 관련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²⁾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침해사고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평상시 예방활동으로서 금융위원회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할 때 정보보호를 포함한 정보기술(IT) 부문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금융보안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³⁾이 상시적인 보안관제 기능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금융산업국)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전자금융 관련 보안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1. 금융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

3) 금융보안원(민법상 사단법인):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른 침해사고대응기관

○ (설립배경) 2013년 3·20 사이버 공격,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의 발생에 따라 대형 금융 보안사고 재발 방지 및 예방·대응 등을 위해 설립된 금융보안 전담기구*(’15.4.10.)

* 은행 등 202개 기관 사원으로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주무관청 금융위)

○ (규모) 4본부 8부 3센터 3실 / 307명

○ (주요업무) 통합보안관제 및 사이버 위협 정보공유 체계 운영, 금융분야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안점검, 디지털금융·핀테크 보안 및 금융권 자율보안 지원, 금융보안 정책·기술 연구 및 정책 수립 지원, 금융보안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지원 및 정보보호

을 수행하며,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에서 자체 금융전산위기상황 대응반을 구성하여 금융전산분야 위기경보를 발령하며, ‘전자금융감독규정’⁴⁾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기관인 금융보안원이 침해사고의 원인 조사를 지원하고 있음.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금융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으로, 최근 ICT 및 첨단기술산업의 급성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거래에 대한 수요 증가 등으로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비대면 및 모바일거래 증가 등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보안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취지에 공감하나,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보안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금융혁신도 고려

4)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4(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등) ①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침해사고대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금융보안원 <개정 2015. 3. 18.>

2. 삭제 <2015. 3. 18.>

3. 금융위원장이 지정한 자

② 침해사고대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를 위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

2.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발령내용의 전파

3. 침해사고의 원인분석과 신속한 대응 및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4.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관련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하기 위한 기구(이하 "금융권 통합 보안관제센터"라 한다)의 운영 <신설 2016. 10. 5.>

5.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침해사고 예방, 대응을 위한 자율기준의 마련 및 운영

⑦ 금융위원장은 침해사고대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행령 제11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보안취약점 통보를 위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17조 소관 업무에 “금융 보안”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한 “금융 혁신” 관련 내용까지 함께 포함하여 신설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2.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설치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 금융에 관한 보안체계 구축 및 보안사고 예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5절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5절 금융보안전문위원회</u>
<신 설>	<u>제23조의2(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둔다.</u>
	1. <u>금융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u>
	2. <u>금융에 관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u>
	3. <u>금융에 관한 보안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u>
	4. <u>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보안전문위원회에 부여된 업무</u>
<신 설>	<u>제23조의3(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u>
	<u>②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현행	개정안
	<u>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u> <u>1. 금융 관련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의 정책·기술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u> <u>2. 대학에서 경제학·경영학·회계학·컴퓨터공학 또는 정보보안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서 금융 관련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의 정책·기술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u> <u>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u> <u>③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u> <u>④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보안전문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 <u>⑤ 위원장이 아닌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 <u>⑥ 금융보안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u> <u><신설> 제23조의4(회의 등) ①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이 요구할 때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단</u>

현 행	개 정 안
	<u>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u> <u>②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③ 금융보안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5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전문위원회”로 본다.</u>
<신 설>	<u>제23조의5(조직·규칙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u> <u>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u>
<신 설>	<u>제23조의6(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제23조의2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한다.</u>

□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금융 보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설치하는 위원회로,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⁵⁾(법 제4절)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5)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의 사전심의 등을 결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 3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됨.

< 개정안의 내용 >

조 문		내 용
업무(\$23의2)		1. 금융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구축 2. 금융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3. 금융 보안의 관리·감독·감시 관련 금융위 위임 업무 4.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구성 (\$23의3)	위원	총 5인(위원장 1인, 상임 1인, 비상인 3인)
	위원 선임	금융위원장 추천, 대통령 임명 (위원장은 위원 중 대통령 임명) ¹⁾
	위원 요건	금융보안 관련 경험이 있는 공무원, 교수 또는 경험·학식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이 아닌 위원 임기 ²⁾	3년(1회 연임 가능)
	위원장 및 상임위원	위원장: 정무직 상임위원: 임기제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기타	결원시 임기, 정치활동금지, 결격사유, 겸직 등 금지, 신분보장 등 (금융위 규정 준용)
회의 등 (\$23의4)	소집	2명 이상 위원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 (위원장 단속 소집 가능)
	의결정족수	3명 이상
	기타	제척, 기피, 회피, 의결서 작성, 의견 청취 (금융위 규정 준용)
조직·규칙(\$23의5)		조직 및 운영 관련 규칙 제정 근거 마련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 (\$24①, \$58 등)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해 금융감독원 지도·감독

주 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구별됨.

2) 위원장의 임기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내에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금융 보안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국민의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보안이 중요하나, 금융당국의 관련 전문성 부족 등

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⁶⁾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이라는 큰 목표 하에서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혁신과 금융보안을 균형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금융보안 업무만을 다루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혁신과 보안의 균형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별도 위원회의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금융위원회에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금융보안 전문성을 보유한 위원을 증원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정책 마련·운영 등에 있어 더욱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금융보안 관련 위원회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신설되는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⁷⁾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설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6) 이수환,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입법·정책과제: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1.6.4.

7)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구속력이 없는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름.

－ 합의제행정기관: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

－ 자문기관: 부속기관 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4호)

- 개정안은 금융보안전문위원회가 소관 업무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등 금융보안전문위원회에게 증권선물위원회와 동일한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행정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⁸⁾
- 개정안은 금융보안전문위원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부당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음.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업무 및 권한>

구 분	세부 내용
업 무	- 금융에 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체계구축 - 금융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 금융 보안의 관리·감독·감시 관련 금융위원회 위임 업무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권 한 (증권위와 동일)	- 금융보안전문위원회는 소관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 -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금감원의 제출의무 -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데 필요한 명령 가능 -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집행정지 등

-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8) '24.3월말 기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치·운영 중인 금융위원회 소관위원회는 총 11개로, 이 중 '행정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일함. 【참고자료 1】 참조

등9)을 둘 수 있는데,10)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함.11)

<행정위원회 설치 요건>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그런데 관계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에서 금융보안 정책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므로 합의제행정기관 설치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금융보안 전담기구인 금융보안원에서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전담기구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9)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기능과 아울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

10) 「정부조직법」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1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이하 “행정위원회”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②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 둘째, 개정안은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업무로 “금융에 관한 보안사고 대응에 관한 업무”와 “금융에 관한 보안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에서 수행하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침해사고나 보안위험에 대한 대응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집행적 성격의 업무이므로 업무의 성질상 합의제행정기관이 수행하기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음. 즉, 악성코드 감염 등 금융보안사고¹²⁾가 발생할 경우, 사고 대응을 위해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긴급한 사고 대응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셋째,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보하도록 하면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를 겸임하도록 하고 있으나(§20②), 신설되는 금융보안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만 하고 있을 뿐, 겸임과 관련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서 금융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의미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³⁾

12)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비인가 서비스 접근, 디도스 공격 등

- 또한, 개정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같이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만 규정(3년, 1회 연임)하고 있는데, 증권선물위원회의 경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있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임기에 따르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인 반면,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경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보안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겸임 여부에 따라 위원장 임기 관련 규정의 신설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13) 금융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총 2인)임.

【참고자료 1】 금융위원회 소관 위원회 현황 (24.3월 기준)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성격	구성일
1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행정 위원회	08.2.29
2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금융중심지의 조성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문	08.6.30
3	보험조사협의회	보험업법 제163조	자문	04.2.14
4	시장효율화위원회	증권선물거래소법 제2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4조	자문	05.7.14
5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	자문	24.1.16
6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6조	자문	98.4.1.
7	공적자금관리 위원회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	자문	09.7.28.
8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심의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자문	23.1.1
9	분담금관리 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자문	18.9.21
10	혁신금융심사 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	자문	19.4.1
11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자문	22.1.14

문 의 처

02)6788-5104